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9. 30 선고 2021재가단5000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(재심원고) K 유한회사

피고(재심피고) B

변 론 종 결 2021. 9. 9.

판 결 선 고 2021. 9. 30.

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. 6. 15. 선고 2016가단4703 판결

주 문

1.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.
2.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

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.

대구 달서구 C 대 129.2㎡ 및 그 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층 2층 주택과 세멘부록조 그라브층 단층 변소 중 각 공유지분 11분의 2에 관하여, 피고(재심피고, 다음부터 ‘피고’라고 한다)와 D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2015. 3. 25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D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와 2015. 9. 14. 접수 제1475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재심대상결정의 확정

L 주식회사(변경전 상호 A 주식회사)는 2016. 3. 29.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4703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6. 6. 15. L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(다음부터 ‘재심대상판결’이라 한다)을 선고하였고, 2016. 8. 20.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.

2.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L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(재심원고, 다음부터 ‘원고’라고 한다)는,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D의 상속지분이 2/11임에도 2/5로 잘못 계산하여 청구인용하였는바, 이는 실체적 진실에도 반하는 결과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.

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.

판사 손원락